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통신공사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 박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78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보통신공사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 구축(안 제8조 제9항 신설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훈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8. 28.

다. 회 부 일 : 2025. 8.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감리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감리원 배치 신고를 받고 있으나, 각 시·도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감리자의 이력이나 중복신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감리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때문에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신고 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정보와 배치 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중복신고나 허위 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감리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9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공사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 구축(안 제8조 제9항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7조 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감리 등) ① ~ ⑧ (생략) <신설>	제8조(감리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에 관한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로 하여금 공사에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¹⁾.

- 감리대상인 공사에는 감리원을 1인 배치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되나 발주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공사는 예외가 인정됨²⁾.
- 감리원 중복배치가 인정되는 예외는 ①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공사의 종류가 동일하고 동일한 시·군에서 행해지거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공사와 ②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임³⁾.
- 그런데, 정보통신공사 감리업체의 사업 범위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으로 배치하더라도 그 배치현황을 보고받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면 별도의 교차검증을 거치지 않는 이상 감리원의 불법 중복 배치를 점검할 수 없는 상황임.
- 안 제8조제9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지역별로 분절되어 있던 정보통신공사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
- 1) **제7조(설계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2)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1명 배치해야 한다.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으로 배치하는 것은 관계 법령 위반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설비의 부실 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개정안을 통해 전국 단위의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규정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이 전국 단위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명칭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구체적인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유사한 공사인 건축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에 전국 단위의 공사감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한 사례는 없으나 ,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사협회가 건축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보의 중복 배치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리뿐만 아니라, 설계,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대해 통합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0